

의안번호	2201605
의 퇴 인	박지혜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5.
추계번호	24C1497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의 보조) 제1항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부식 구입비(정부관리양곡 포함) 및 취사용 연료비,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※(현행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
2	안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의 보조) 제3항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보조한 부식구입비, 냉난방비, 취사용 연료비,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(제1항 각 호의 비용)를 절감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결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경로당은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이 확정된 회계연도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다른 비용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의 보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, 급식 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는 그 외에 부식비, 공공요금 등의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
 - 2024년 보건복지부의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800억원(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율 90%)
 - － 서울 3,425개소, 지방 65,031개소 지원 반영
 - － 개소당 지원 단가 2,689천원

- 경로당 급식지원인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에 방문하여 배식, 식권 검수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(공익활동형), 그 외 행정 등의 지원 업무(사회서비스형)을 수행하는 사업으로, 2024년 4월 현재 6만 4,279명 지원 중
 -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총액은 1,690억원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,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의 수와 필요 비용 규모, 경로당의 필요 비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원할 재정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함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부식 구입비, 취사용 연료비,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기존 지원이 확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
- 또한, 경로당이 교부된 보조금을 절감하여 결산에 따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상이전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자체 노력으로 보조금을 절감하여 반납하지 아니할 경로당의 수와 그 절감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